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11. 26 선고 2021나119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

담당변호사 박정혁, 유병일

피고, 피항소인 1.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

담당변호사 이단비

2.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한

담당변호사 손웅

변 론 종 결 2021. 10. 8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6.

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9가합5420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1. 가.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. 3. 12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A는 C에게 별지2 채권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: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)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2. 가. C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.

4. 6.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. 9. 3.자

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 B 주식회사는 C에게 별지2 채권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:

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)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8면 12행의 “인천광역시” 앞에 “제1심 법원의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9면 4행부터 9행의 “없다.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 ③ 원고는, C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피고 B에 대한 미수금 채무 및 기간별 매출액 등을 근거로 C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도 C에 대한 부실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.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,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G의 매출액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, 회사의 영업상황에 따라 미수금이나 매출액은 증감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, 미수금이 존재하였거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재정의 부실 및 그로 인한 대출금의 연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 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진석, 판사 이종훈, 판사 서여정